C - 83 - 2013

- (4) 가설벤트의 부등침하 방지를 위하여 지반은 철저히 다짐을 실시하거나 콘 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.
- (5) 기초가 경사진 경우에는 가설벤트의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6) 최종적으로 가설벤트가 조립, 설치된 경우에는 레벨을 측정 점검하고 볼트 의 체결상태 및 위치를 점검하여야 한다.
- (7) 가설벤트 작업대 단부에는 근로자들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, 안전난간 하부에는 낙하물을 방지하기 위한 발끝막이판(Toe board)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8) 작업시작 전에 작업통로, 안전방망,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의 설치상태와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
## 8.4 PCT거더 거치

- (1) PCT거더 인양 시작 전에는 작업방법, 순서, 안전조치상항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,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.
  - (가) 작업 인원수와 근로자 건강상태
  - (나) 작업신호와 통신시설 상태
  - (다) 고소작업용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상태
  - (라) 낙하물 방지망, 추락 방지망, 안전난간 등과 같은 가시설 설치상태
  - (마) 양중장비의 양중능력을 고려한 정격속도
  - (바) 근로자들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위험 방지조치 실시
  - (사) 인양 Lug, 샤클, 와이어 등 줄걸이 기구에 대한 적정성 확인
- (2) 이동식 크레인은 작업조건, 주변의 환경, 공간확보, 제작사의 사용기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적합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(3)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설치·해체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넓이와 지내력이 확보된 작업장을 조성하여야 한다.